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동향 및 우리의 대응



고 준 성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 目 次 ■

- I. 논의에 앞서
- II. FTA의 의의 및 체결 현황
- III. 최근 FTA 체결 및 논의 동향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 IV. FTA와 우리의 대응
- V. 결: 향후 FTA 체결 확산이 주류를 포함한 우리나라 농산물에 미칠 영향

I. 논의에 앞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 여건은 끊임없이 그리고 점차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주목해야 할 세계경제 여건 변화의 중심에는 두개의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글로벌 차원에서의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를 의미하는 시장개방(market openness) 환원하면 개방화(liberalisation)의 가속화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제블록 즉,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前者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시장개방은 종전의 GATT 그리고 지금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현재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논의하기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라는 다자간무역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後者の 지역적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는 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형태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WTO 출범 이후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FTA의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표 1〉 2001년 9월 기준 발효중인 양자간·다자간 FTA의 시기별 및 지역별 체결 현황

지역	양자간/다자간 FTA	GATT 시기	WTO 시기	계
유럽	양자간 FTA		19	19
	다자간 FTA	16	20	36
미주	양자간 FTA		2	2
	다자간 FTA	1		1
아시아	양자간 FTA		1	1
	다자간 FTA			
러시아·CIS	양자간 FTA		12	12
	다자간 FTA		1	1
오세아니아	양자간 FTA	1		1
	다자간 FTA			
기타*	양자간 FTA	1	19	20
	다자간 FTA	8	9	17
계		27	83	110

*) 기타 지역에는 유럽공동체(EC) 및 유럽자유무역지역(EFTA)이 유럽지역 이외의 국가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등이 포함된 것이다.

II. FTA의 의의 및 체결 현황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한 형태인 FTA라 함은 체약국들간의 무역에 있어 관세를 포함한 제반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의 창설에 관한 협정을 가리키나 제3국에 대해서는 각 체약국의 기존의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점에서 또 다른 지역무역협정의 형태인 관세동맹(customs union)과 구별된다. 그런데 잘짜여진 다자간무역체제인 WTO 하에서 회원국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FTA 체결로 인해 체약국들간에 부여되는 무관세와 같은 특혜대우에 대해서는 WTO체제하에서 회원국들간에 요구되는 최혜국(MFN)대우의 적용이 면제되는 예외가 인정되어¹⁾ 결과적으로 FTA 체약국들이 역외 회원국들에 비해 그러한 차별적

인 무역상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내 체약국들간의 교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에 그러한 FTA 네트워크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교역에 있어 그만큼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WTO에 따르면 세계총무역중 RTA 체약국들간의 무역 비중이 현재 43%이며, 2005년에는 51%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48-94년간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5건이었음에 비하여 1995년 이후 2002년 3월까지의 불과 7년간 WTO에 통보된 RTA가 125건을 넘어서고 있다. 참고로 GATT나 WTO에 통보되지 않은 RTA를 포함하여 현재 발효중인 RTA는 총 243건이며 그 중 FTA가 175건, 관세동맹이 22건이며, 나머지 46건은 일부 품목만을 포함하는 특혜관세협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GATT 발효 이후 2001년 9월까지 체결·발효중인 FTA는 총 110건이며, 이중

〈표 2〉 2001년 9월 기준 발효중인 양자간·다자간 FTA의 시기별 및 지역별 체결 현황

기간	GATT시기 (1948-1994)										WTO시기	총계
	48-54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소계	95-2001	
통보 건수	2	3	12	9	21	19	6	5	33	124	90	214

GATT시기에 체결된 것이 27건이고, WTO시기에 체결된 것이 83건에 달한다. 또한 이를 양자간 FTA와 다자간 FTA로 구별해 보면 양자간 FTA가 54건, 다자간 FTA가 56건으로 비슷하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55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가 13건이며, 이밖에 美洲 3건, 아시아 1건, 오세아니아 1건 그리고 기타 37건 등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1 참조).

III. 최근의 FTA 체결 및 논의 동향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

지난 1960년대 및 70년대 유럽공동체(EC)를 중심으로 다수의 FTA가 체결되다가 80년대 들어 위축되었던 FTA가 90년대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으로 인한 경제적 자신감과 이로 인한 자유무역정책의 추진 동력을 되찾은 것과 1991년의 독일 통일과 이로 인한 공산권블록의 해체로 인해 다시 FTA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1990년대를 흔히 지역주의의 복고(regionalism redux)시기라고도 부르는 바,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체결되었거나 추진중인 FTA의 전반적인 동향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FTA의 급속한 증가 및 확산

먼저 그간 GATT 및 WTO에 통고된 지역

무역협정(RTA)의 체결 건수에 있어 변화를 살펴보면, GATT시기의 46년간(1948-94년) 통보된 RTA가 124건으로 연평균 2.7건에 불과하였던 반면에 WTO 출범 이후 2001년까지의 6년간 통보된 RTA는 90건으로 연평균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WTO 출범 이후 매년 통보되는 RTA의 건수가 지난 GATT시기의 연간 통고 건수에 비해 무려 5.5배나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이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RTA를 이용한 무역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WTO 문서의 하나로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대한 양해”를 채택하여 RTA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WTO 회원국들간에 RTA 주로는 FTA의 체결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현재 다수의 FTA가 교섭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FTA의 증가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하나의 추세로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RTA의 지역별 체결 추이를 보면, GATT 출범 초기에는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체결되었으나 1960년대 중미지역, 1970년대에는 아시아지역 등으로 확대되다가, 1980년대 중반 특히 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표 3 참조). 그 결과 오늘날 144개에 달하는 WTO 회원중 단 하나의 RTA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회원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홍콩, 대만, 몽고 등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3〉 2001년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의 지역별·시기별 체결 추이

지역별	GATT시기					WTO시기	총계
	1948-64	1965-74	1975-84	1985-94	소계	1995-2001	
유럽	2(1)**	6	7	23(3)	38(4)	50(4)	88(8)
미주	1	1	1	10(1)	13(1)	2(1)	15(2)
아시아			2	2	4	1	5
중동	1		3	1	5	2	7
아프리카				1	1	1	2
기타*		2	3	1(1)	6(1)		6(1)
합계	4(1)	9	16	38(5)	67(6)	56(5)	123(11)

*) 기타 지역은 오세아니아, 태평양도서 지역등을 가리킴.

**) ()의 숫자는 GATS 제5조에 따른 서비스분야의자유화를 규정한 지역무역협정을 가리키는 바 이들 협정은 모두 상품분야의 무역장벽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의 협정 체결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

2. 기존 FTA의 확대 및 거대 경제블록의 추진 움직임

1990년대 이후 FTA의 세계적 흐름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유럽지역의 EC와 EFTA, 미주지역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등 각 지역별로 이들 선도적인 지역경제통합체를 축으로 체약국을 추가로 영입하거나, 역외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당해 지역경제통합체의 규모를 확대함과 아울러 특히 WTO 출범 이후 이들 대규모 지역경제통합체 상호간에 협력 확대나 연계를 통해 거대 경제블록의 형성을 활발히 모색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유럽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EC는 지난 1995년까지 4차례의 확대를 통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킴으로써 현재 15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동유럽 국가의 추가 가입을 위한 준비를 결정한 바 있

고, 역외 국가와의 개별적인 관세동맹 및 FTA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RTA의 체결을 통한 네트워크를 꾸준히 추진하여, 2001년 현재 28개 국가와의 양자간 RTA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이다. 나아가 EC는 현재 다른 지역의 기존 FTA와의 연계를 통해 거대 경제블록의 형성을 추진중에 있는 바 MERCOSUR와는 2005년을 목표로 FTA를 추진중에 있고, 지중해연안 12개국과의 FTA를 2010년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지난 1995년 미국 및 유럽연합(EU) 지도자간의 합의에 따라 반드시 FTA를 의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간 연대를 의미하는 신범대서양시장(New Transatlantic Marketplace: NTM)을 모색중에 있다. 이밖에 아시아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하여 정식의 RTA는 아닌 단순한 협의체에 불과하지만 ASEM을 출범시켜 참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역시 역외 국가들과 14건의 양자간 RTA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태이다.

둘째, 미주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북

미지역의 경우 NAFTA가 중심이 되어 다른 FTA와의 연대를 추진중에 있는 바 칠레의 NAFTA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특히 미국의 주도하에 쿠바를 제외한 미주대륙의 34개국 모두가 참여하는 미주자유무역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FTAA) 협정을 추진하여 2005년 1월 31일까지 관세인하 협상을 종료하고, 동년 12월 31일 FTAA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이밖에 아시아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하여 정식의 FTA가 아닌 협의체이기는 하지만 APEC에 동참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남미지역의 경우 MERCOSUR를 필두로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중남미통합연합(LAIA) 그리고 다양한 양자간 RTA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MERCOSUR가 중심이 되어 2005년까지 EU와의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간 경제관계강화협정 (Closer Economic Relations Agreement: CERA)과의 연계를 논의중에 있다.

셋째, 아시아지역의 상황을 보면 아세안자유무역지역(AFTA)이 중심이 되어 1995년 베트남, 1997년에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를 추가로 영입함으로써 체약국을 확대하여 왔고, 현재 CERA와의 연계를 논의중에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형성된 EC, NAFTA, MERCOSUR, AFTA 등과 같은 기존의 대규모 지역경제통합체가 신규 회원의 영입이나 역외국가와의 양자간 RTA 네트워크를 통해 그 규모를 확대하거나 다른 지역의 대규모 RTA와의 상호 연계나 통합을 통해 '거대' 경제블록을 실현할 경우 이는 국제무역 및 투자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고, 특히 역외국가들의 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들 경제블록이 WTO안에서의 다자간무역협상이나 운영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활동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리라고 보여진다.

3.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급물살 조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간 FTA의 무풍지대에 가까웠던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 속한 일본, 중국 및 대만 등이 최근 들어 적극적인 FTA를 모색하면서 이 지역에서 다수의 FTA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먼저 일본은 2002년초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동반자 협정(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Singapore and Japan for a New-Age Economic Partnership: JSEPA)를 체결함으로써 처음으로 FTA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지난 11월 ASEAN과의 경제동반자관계 구축을 약속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10년안에 FTA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중국은 지난 11월 ASEAN과의 FTA 창설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초부터 관세인하협상을 시작해 2004년 중반까지 이를 타결한 후 2007년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60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또한 ASEAN의 6개 선발체약국과는 2010년 그리고 나머지 4개 체약국과는 2015년까지 FTA를 타결하기로 하는 일정까지 발표되었다.

이밖에 대만도 2002년 초 대만-미국-일본간 FTA 창설을 제의한 바 있고, 11월에는 ASEAN에 FTA 창설을 제안하였다.

한편 지난 1998년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ASEAN과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결

속하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역(EAFTA) 창설을 중장기적 과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할 때 수년안에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지역에서도 거대 FTA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할 수 있다.

4. 포괄적 FTA의 이용 확산

대개의 FTA는 협정의 목적과 범위 및 협정의 규율대상으로 구성된 협정 본문과 관세철폐 일정을 규정한 관세양허표, 서비스를 포함할 경우에는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표 및 각 규율대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한 의정서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NAFTA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협정과 별도로 환경 및 노동에 관한 보충협정을 추가로 체결할 수도 있다. 여기서 FTA의 규율대상에 대해서는 달리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해 체약국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FTA란 명칭에서 보듯이 관세철폐 등 상품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규율대상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그 핵심이다. 그런데 최근 체결되는 FTA의 규율대상에는 전통적인 상품무역 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분야 등까지도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체약국간의 경제활동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상이한 국내제도를 조화시키고 그밖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바, 가령 체약국간의 기술표준의 상호인정이나 경쟁정책에 있어 협력 등이 그러하다.

이밖에도 FTA 체약국의 일방이 개발도상국인 경우 인력 육성이나 수송인프라에 대한 지원 등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한다(표 4 참조).

생각건대 FTA의 규율대상은 협정의 체결을 통해 무역을 창출하고, 협정 당사국간에 있어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체약국들의 이익에 부합하리라고 보여진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술 진보에 의하여 국경을 넘는 사업경영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나라간의 경제적 연대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경제통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무역 촉진 이외에 사람, 자본 및 정보가 원활하게 국경을 넘어 흐를 수 있는 여건의 확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교섭중이거나 제안된 FTA 중에는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s: EPA)이라 하여 그 규율대상안에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이외에 투자와 사람의 이동 또는 정보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요소와 모든 관련 국내제도의 차이 내지 부조화가 국제영업활동의 수행에 있어 장애가 되는 제반 요소로부터 정보인프라의 정비와 전자상거래 등 관련 제도의 조화, 무역절차의 전자화, 원스톱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행정절차의 개선, 경쟁정책과 지적소유권에 관한 법제의 정비 및 전문가의 육성 그리고 이의 집행에 있어 협력 나아가 환경과 노동문제 등 광범위한 대상을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이 FTA의 규율대상에는 장래의 WTO협정이나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대상까지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어 체약국의 국내제도의 조화

〈표 4〉

주요 FTA의 규율대상 비교

자유무역협정 규율대상	N A F T A	E U · 멕시코	미· 이스 라엘	M E R C O S U R	아 세 안 A F T A	F T A *	G 3 · 멕시코	멕시코· 볼리비아	캐나다· 칠레	멕시코· 칠레	A N Z C E R T A	미· 요르 단
1. 관세철폐	○	○	○	○	○	○	○	○	○	○	○	○
2. 수량제한의 금지	○	○			○	○	○		○	○	○	
3.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	○	○
4. 반덤핑·상계관세	○	○	○			○			○		○	
5. 원산지규칙	○	○	○	○	○	○	○	○	○	○	○	○
6. 관세평가·세관절차	○	○					○	○	○	○	○	○
7. 투자	○	○			○	○	○		○	○	○	○
8. 서비스	○	○	○	○	○	○	○	○	○	○	○	○
9. 기술규정 상호인정(MRA)	○	○		○	○	○	○	○		○	○	
10. 위생 및 검역	○	○	○	○		○	○			○	○	
11. 정부조달	○	○	○	○		○		○		○	○	○
12. 지적재산권	○	○	○		○	○	○	○		○	○	○
13. 경쟁정책	○	○				○			○	○	○	
14. 稅制												
15. 분쟁해결	○	○	○	○	○	○	○	○	○	○		○
16. 국제수지조항		○	○									○
17. 일반예외	○	○	○				○		○	○	○	○
18. 경제기술협력		○		○								○
19. 합동위원회	○	○	○	○					○			○
20. 전자상거래												○
21. 자연인의 이동	○			○			○	○	○	○		○
22. 환경	○								○			○
23. 노동	○								○			○
24. 에너지	○			○								

*) FTAA는 작업그룹의 검토과제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와 그 목표 기한의 설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에 있어 일종의 'WTO 플러스(+)' 형태라 할 수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WTO 관련 규정에 비해 보다 개방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IV. FTA와 우리의 대응

1. 우리의 FTA 추진 현황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에 처한 이후 이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수출 확대와 외국인투자의 유치 정책을 취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WTO 출범 이후 회원국들간의 FTA의 체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단 하나의 FTA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수출에 있어 그만큼 불리한 교역조건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수출시장의 활로 모색을 위한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그 첫 대상국으로서 칠레를 선정하여 양국간에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12월 제1차 협상을 시작하였고, 순조롭게 순항하던 협상은 포도 등과 같은 칠레산 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수입으로 인한 국내 재배 농가에의 피해 발생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난항을 거듭하다가, 2002년 10월까지 6차례의 협상을 가졌고, 마침내 지난 10월 25일 3년여에 걸친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가서명된 한-칠레FTA는 앞으로 세부 문안조정 작업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한 후 정식 서명을 하고, 2003년 상반기중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경우 칠레와 비준서를 교환하고 나서 30

일 경과후 발효하게 된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FTA 체결에 대비한 양국간 공동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며, 2003년 초부터 싱가포르와 FTA 체결에 대비한 양국간 공동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의사를 밝힌 태국, 멕시코, 호주 및 뉴질랜드 등에 대해서는 먼저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FTA 체결에 따른 효과 및 영향이 큰 미국, 중국, EU 등의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ASEAN+3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FTA 체결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3국 총리는 2003년도 3국 공동연구과제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2.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및 과제

먼저 FTA에 의한 지역주의의 확산은 보편적 추세로서 국가들은 앞으로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자 할 것은 명확하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져 가는 수출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직까지 발효된 단 하나의 FTA도 체결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밖에 없음은 물론이다. 더욱이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많은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 다른 국가들 특히 미국이나 EC 또는 ASEAN과 같은 거대 시장과 FTA를 체결할 경우 당해 FTA 체결국의 수입시장에서 우리 수출 기업의 시장 점유가 크게 잠식될 것은 명확하며,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시장 상실까지도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난 1998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방향 설정은 선택이라기 보다는 當爲로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으로 FTA 체결 대상 후보국을 선정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는 바 여기에 있어서 최우선 기준은 당해 국가와의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에 우리와의 교역규모가 큰 미국, 중국, 일본, EC 등의 거대 경제권이 해당될 것이나 이들과의 FTA는 영향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기간내에 체결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이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준비는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밖에 (i)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 (ii) 현재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있어 심각한 무역장벽을 갖고 있는 국가, (iii) 기준에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이 불리한 국가 등과 같은 기준은 특히 중소규모의 경제를 가진 국가들중 유망한 체결 대상 후보국을 선정함에 있어 유용하리라고 본다.

셋째, 한-칠레 FTA 교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어떠한 후보국을 선정하더라도 무역장벽의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FTA의 기본틀을 적용하다 보면 시장개방으로 인한 집중적인 산업피해에 직면하는 분야, 품목 및 업종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경우 협상 과정에서 이들 취약분야의 시장개방을 예외로 하거나 유예기간을 가능한 최장화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협상 상대가 있는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인한 국가 전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당해 협정의 체결로 인해 심각한 산업 피해에 직면하게 될 산업분야 및 품목 또는 업종의 생산자[공급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구조조정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의 수립이 요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한-칠레 FTA 비준을 앞두고 피해능가에 대한 보상과 경쟁력강화를 담은 FTA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고, 동 법은 칠레와의 FTA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등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다른 FTA가 타결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러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 효과가 기대되는 품목을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는 지적²⁾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FTA 체결에 따른 심각한 산업피해에 직면할 수 있는 당해 집단의 설득을 위하여 'FTA 평가위원회'와 같은 심의절차나 국회의 비준동의 이외에 별도의 국가적인 컨센서스 수립절차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현재 발효중인 FTA는 100건이 훨씬 넘는다. 이들 FTA를 내용상으로 보면 규율대상의 범위로부터 구체적인 시장개방의 수준 및 속도 그리고 특히 예외 인정의 범위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존 FTA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우리의 교섭 상대국별로 적절한 모델 FTA안을 준비함으로써 우리 협상력과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재 우리는 칠레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이 유일한 성과인데, 이 협정마저도 향후 국회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세계 각국은 경

쟁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추진중에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예외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추진에 있어 속도를 조정할만한 여유있는 상황에 있지 않다. 더욱이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 일본이나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 다른 국가들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의 수출기업이 직면하게 될 상황에도 대비해야만 한다. 더 이상 FTA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연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인식을 국민 전체가 공유해야만 할 때이다.

V. 결: 향후 FTA 체결 확산이 주류를 포함한 우리나라 농산물에 미칠 영향

먼저 지난 10월 타결된 한-칠레 FTA의 상품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칠레는 품목수를 기준으로 각기 94.5%와 96.5%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여기서 주류를 포함한 농산물 분야에 대한 우리의 양허안을 살펴보면, 이들 농산물은 우리나라가 칠레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관계로 다양한 형태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 및 유예 일정도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i) 민감품목인 쌀과 (신선)사과 및 (신선)배 등 21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신선)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적용하기로 양허하였다. (ii) 고추, 마늘, 보리, 콩, 팥, 고구마, 양파, 돼지고기(내동도체, 설육), 버터·치즈를 포함한 낙농제품, 감귤, 대추, 잣, 밤, 수박, 녹차, 홍차, 생강 등 고율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373개 민감 농산물에 대해서는 DDA 협상 이후 양허문제를 논의하기로 약속하였다. (iii) 쇠고기(400톤), 닭고기(2,000톤 냉동, 조제저장), 자두(280톤)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ariff rate quotas: TRQ)를 적용함과 아울러 DDA 협상 이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iv) 조제분유, (건조)과실 등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16년 내에, 돼지고기, 양고기, 토마토, 당근, 레몬, 건포도, 복숭아 등 197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봉숭아, 통조림, 잼, 옥수수(종자), 완두·콩, 기타 채소(냉동), 호두 등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7년 내에, 말, 양, 닭, 칠면조, 튜울립, 백합, 배추, 상치, 아몬드, 넛트류 등 545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 (v) 중우, 중돈, 중계, 모피, 양모, 쌀, 밀, 호밀, 귀리, 수수, 조, 사탕무 등 224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후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양허하였다. 요컨대 한-칠레 FTA에 따른 우리측의 농산물 시장 개방 약속은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과와 배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포도 역시 계절관세를 적용함으로써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류부문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관세율은 베르못과 유사 포도주(HS 2206)와 그 밖의 발효주(HS 2206)의 경우 15%, 포도주(HS 2205)의 경우 18.8%, 맥주(HS 2203)의 경우 30% 그리고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HS 2207)이 57.2% 등의 수준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타결된 한-칠레 FTA에서 우리나라는 칠레산이 특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품목 전반³⁾을 협정 발효후 5년 내 관세철폐 대상으로 양허하였다. 따라서 예정대로 내년 상반기중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2008년 상반기 이후부터 이들 주류품목에 대한 관세가 무세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선정을 위해 칠레 對韓 주요 수출품목별 현시비교우위(RCA)지수를

계측한 결과에 따르면 포도주의 상대적 비교 우위지수가 높아 칠레산 포도주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증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

따라서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업계는 칠레산 포도주의 관세철폐에 따른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증가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GATT 1994 제24조 및 GATS 제5조.

2) 박찬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의의와 과제, 전경련, 2002.12, p.11.

3) 구체적으로 한-칠레 FTA의 5년내 관세철폐에 해당하는 주류를 소개하면 맥주, 발포성포도주, 붉은 포도주(2리터이하 용기), 흰포도주(2리터이하 용기), 기타포도주(2리터이하 용기), 붉은포도주(기타), 흰포도주(기타), 기타포도주(기타), 베르뭇과 기타유사포도주(2리터이하의 용기의것), 청주, 약주, 탁주, 곡물발효주(기타), 와인쿨러, 발효주(기타), 조주정, 기타변성않는에틸알콜,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변성주정(알코올용량불분), 꼬냑, 기타 포도주, 스카치 위스키, 버본 위스키, 라이 위스키, 기타위스키, 럼및테피아, 진릿제네바, 보드카, 인삼주, 오가피주, 기타리큐르류및코디얼, 브랜디류(제2208.20호제외), 소주,高粱주, 데킬라, 기타 주정음료 등이다.

4) 어명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1999.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